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5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배현진·홍준표·지성호

이종성・김기현・황보승희

조명희 • 윤한홍 • 김성원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암표매매로서 처벌 대상이나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그 수준이 매우 낮음.

이에 현행법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43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 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3항 중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
	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
	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
	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u>아니 된다.</u>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	<u>해당하는</u>
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	
<u>망에 전송한</u>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
	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
	산망에 전송한 자
<u><신 설></u>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
	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u>자</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